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1년 10월 1일
- 회부일자: 2021년 10월 6일

3.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출연개요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충북 연구원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620,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지방 행정재정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
3	지방 공기업 평가원	-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4	한국 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필요	158,896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5	충북 인재양성 재단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710,000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

5. 주요내용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62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59백만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

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지원 : 710백만원

-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원금 손실 방지 및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486백만원) 지원
- 수도권 대학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에게 균등한 수혜 제공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월정부담금일부(224백만원)를 장학기금으로 활용

6. 검토의견

○ 법적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였음.
- 각 기관별 관련 근거에 의거 출연이 가능함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5개 기관 출연계획안은 적절히 제출되었음.

구 분	관 련 근 거	비고
충 북 연 구 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 종합의견

① 충북연구원

- 충북연구원은 충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연구를 통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등 충청북도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충북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함.
- 다만, 수탁과제 전입금 수입 등 자체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인건비 상승 등 예측이 가능하고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단순히 출연금 증액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연금	16	17.3	20	27.5	27.5	79.4	36.5	44	44	44.5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광역 시·도 지방분권 정책 지원 등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분담금을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중앙-지방간 상생균형적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은 필요하나,
- 시·도별 재정력, 인구수, 시·군수 등이 상이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16개 시·도가 동일하게 각 250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021년도 출연계획안 심의 시에도 개선토록 요구된 바 있음.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연금	100	200	150	200	200	250	250	250

<연구과제 수행 현황>

연도별	정책연구과제
2021	정부 추가 특례 시군구 선정기준 관련 대응 방안 연구
2020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019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구축방안 연구
2018	충청북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2017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
2016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 MRO 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핵심지원시설 구축 방안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한 기관으로

- 시·도별 재정력 지수(50%)와 평가대상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시·도별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음.

<출연금액 산출>

(단위: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A+B)	분담 비율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충청북도	60	5.95%	0.517	2	30	19	2	30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공기업수(공사·공단, 시군상하수도)

<시·도별 배분 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1	2022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08	△6	9.594	-	510	370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069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50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73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786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60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4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	0.723	3	36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032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394	1	24	28	3	36
충청북도	60	60	-	0.517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87	2	30	32	3	36
전라북도	54	54	-	0.379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38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66	△6	0.489	1	24	38	4	42
경상남도	72	72	-	0.709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 임직원에게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연금	60	60	60	60	60	60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충북도 출연금 배분 내역>

(단위: 천원)

자치단체명	① '20년 결산 지방세	② '20년 결산 보통세	'22년 출연금 (②*1.2/10000)
충북도 소계	2,770,500,808	2,538,609,600	304,634
충북도 본청	1,556,005,652	1,324,131,537	158,896
청주시	592,650,926	592,637,956	71,117
충주시	149,342,752	149,340,171	17,921
제천시	83,158,723	83,158,723	9,979
보은군	26,565,373	26,565,284	3,188
옥천군	36,612,757	36,612,650	4,394
영동군	28,178,978	28,178,888	3,381
증평군	27,234,085	27,234,068	3,268
진천군	101,791,327	101,790,088	12,215
괴산군	26,281,844	26,281,844	3,154
음성군	118,435,006	118,435,006	14,212
단양군	24,243,385	24,243,385	2,909

⑤ 충북인재양성재단

-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각종 장학금 사업과 함께 미래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재단운영 예산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합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46,732	5,000	5,000	5,000	5,000	5,550	5,745	5,780	5,730	620	620	694	657	650	686

<기금 현황 2021.9.30.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수 입								지 출 (사업비)	잔액
	도 출연금	시·군 출연금	문정	청풍	도 민 기탁금*	이 자 (법인세포함)	기타 수입 (위탁포함)	계		
계	46,732	28,000	545	3,014	7,970	20,871	2,260	109,392	26,760	82,632
2008	5,000	3,500	545	3,014	1,950	55	-	14,064	1,353	12,711
2009	5,000	3,500	-	-	1,107	701	-	10,308	1,970	8,338
2010	5,000	3,500	-	-	1,245	881	-	10,626	1,875	8,751
2011	5,000	3,500	-	-	1,575	1,242	-	11,317	1,864	9,453
2012	5,550	3,500	-	-	125	1,477	5	10,657	1,668	8,989
2013	5,745	3,500	-	-	142	1,782	-	11,169	1,865	9,304
2014	5,780	3,500	-	-	202	1,534	-	11,016	1,944	9,072
2015	5,730	3,500	-	-	145	2,305	13	11,693	1,938	9,755
2016	620	-	-	-	108	1,728	545	3,001	1,946	1,055
2017	620	-	-	-	154	1,805	34	2,613	1,827	786
2018	694	-	-	-	287	1,954	726	3,661	2,126	1,535
2019	657	-	-	-	398	2,090	502	3,647	2,795	852
2020	650	-	-	-	321	2,057	246	3,274	2,444	830
2021	686	-	-	-	211	1,260	189	2,346	1,145	1,201

<장학금 지원 실적 2021. 9월말 기준>

구 분	계	사업규모 (명)									계	소요액 (백만원)								
		'08~ '14	'15	'16	'17	'18	'19	'20	'21	'08~ '14		'15	'16	'17	'18	'19	'20	'21		
계	14,206	6,752	1,096	1,099	1,094	1,131	1,189	1,347	498	18,871	9,607	1,417	1,426	1,341	1,413	1,511	1,563	593		
성 적	10,216	5,016	800	800	800	800	800	800	400	12,848	6,803	930	930	930	930	930	930	465		
수도권	765	180	90	90	90	90	90	90	45	1,530	360	180	180	180	180	180	180	90		
도 내 대 학	463	160	40	40	40	59	62	62	-	926	320	80	80	80	118	124	124	-		
로스쿨	193	105	21	21	-	10	20	16	-	882	557	105	105	-	25	50	40	-		
특 기	924	498	74	73	74	58	75	72	-	925	531	65	66	68	56	69	70	-		
희 망	491	249	20	30	36	41	44	45	26	454	234	19	29	30	40	40	39	23		
코 로 나 희 망	200	-	-	-	-	-	-	200	-	100	-	-	-	-	-	-	100	-		
곰두리	319	130	33	32	32	32	33	27	-	301	127	28	29	27	30	30	30	-		
특 별 지 정	159	67	18	13	12	15	16	13	5	144	94	10	7	6	8	10	7	2		
지 정	129	-	-	-	10	26	49	22	22	180	-	-	-	20	26	78	43	13		
총 사 부 량	195	195	-	-	-	-	-	-	-	110	110	-	-	-	-	-	-	-		
연 구	40	40	-	-	-	-	-	-	-	366	366	-	-	-	-	-	-	-		
꿈나무	95	95	-	-	-	-	-	-	-	86	86	-	-	-	-	-	-	-		
복 지	11	11	-	-	-	-	-	-	-	15	15	-	-	-	-	-	-	-		
HCN	6	6	-	-	-	-	-	-	-	4	4	-	-	-	-	-	-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충북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법

-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 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 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충북인재양성재단>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충북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3.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4.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5.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